

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(문희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5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2.

발 의 자 : 문희성, 박경흠, 강혜순
홍영진, 안영호, 정재환
이명녀

1. 제정이유

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, 근로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적용대상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~제4조)

다. 기본계획 수립, 지원 사업,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(안 제5조~제7조)

라.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운영, 위원회의 기능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(안 제8조~제10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5. 8. 14. ~ 8. 21.(7일간) / 의견없음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, 근로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플랫폼 종사자”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·알선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.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경우
2.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
2.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
3.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대책
4.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
5.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·홍보
6.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플랫폼 종사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·조사
2.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3.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물품 등 서비스 제공
4.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
5. 플랫폼 종사자 법률 상담 및 지원
6.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운영 등)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 그 업무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플랫폼 종사자 근로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

2. 플랫폼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생략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~ 7. 생략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
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,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

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미첨부 사유

- 동 조례안은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첨부하지 아니함

작성자

- 소 속: 일자리정책과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
- 이 름: 최석현
- 연 락 처: 290-4461